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나113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나113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52378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석

변론 종결 2024. 11. 8.

판결 선고 2024. 12. 13.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52378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466,923원 및 그 중 40,003,999원에 대하여는 2023. 2. 23.부터, 30,462,867원에 대하여는 2023. 5.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2. 10. 17. 접수 제12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7.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70,466,923원 및 그 중 40,003,999원에 대하여는 2023. 2. 23.부터, 30,462,867원에 대하여는 2023. 5.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2022.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2. 10. 17. 접수 제125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당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 B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칭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22. 3. 18."을 "2022. 2. 16."로 고치고, "보증금액" 앞에 "2022. 3. 18."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4행의 "2022. 3. 30."을 "2022. 3. 3."로 고치고, "체결하고"를 "체결하고, 2022. 3. 3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체결하고"를 "체결하고, 같은 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8행의 "체결하고"를 "체결하고, 같은 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발급하면서" 앞에 "각"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12행의 "소극재산은 H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합계 314,954,000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극재산은 '서산시 J'에 대한 주식회사 O의 가압류 청구금액 7,823,991원, '전남 영광군 K'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40,000,000원(채권최고액 48,000,000원은 대출금액의 120%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은 H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합계 314,954,000원(= H 76,200,000원 + G은행 30,000,000원 + P(주) 95,214,000원 + Q 26,088,000원 + R저축은행 47,314,000원 + S조합 3,500,000원 + T은행 2,153,000원 + U 28,686,000원 + V카드 5,739,000원) 등 총 362,777,991원(= 7,823,991원 + 40,000,000원 + 314,954,00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채권	운전자금(일반)	3개월 이하	20,000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채권	운전자금(일반)	2년 초과	20,000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채권	부동산담보대출	2년 초과	36,260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채권	운전자금(일반)	2년 초과	30,000			
(주)	대출채권	기타(대출채권)	2년 초과	95,214	1,101	1,474	
대출채권	신용대출(종합통장대	2년 초과	26,088				

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채권	운전자금(일반)	3개월 이하	20,000		
저축은행	대출채권	신용대출(문화동장대	2년 초과	47,314	36,088	681	
계		314,954	37,189	2,155			

15. 대출/현금서비스 정보

2005-10-06	2021-10-05	개인대출정보	3,500	(대전충	신용대출	
2022-09-15	2023-01-30	개인대출정보	2,153	은행(디지털영업	신용대출	
2022-08-08	2022-08-08	개인대출정보	15,000	(주)(신	신용대출	
2020-08-11	2022-11-09	개인대출정보	13,686	(본점(서	신용대출	
2022-06-15	2022-11-25	카드	5,739	카드(동산)(		
2022-11-18		현금서비스	820	(본부총괄)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2023. 2. 23.부터"와 "2023. 5. 15.부터"의 각 앞에 "원고의 대위변제일인"을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불과하고,"를 다음에 "불과함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62,777,991원에 달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2028."을 "202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 끝에 "(대법원 2019.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는 원고에게"를 삭제한다.

3. 피고 B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이하 이를 다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하고, 그 계약을 다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처분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은 제1심에서는, 피고 A이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 A이 신용불량이라 대출을 받지 못하므로 위 주택과 대지(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B에게 증여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역시 '증여'인바, 이 사건 각 증여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처분행위라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1. 1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22. 12. 19.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증여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피고 A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적극재산은 158,868,240원, 소극재산은 362,777,991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고, 시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아래 ③~⑤만 더하더라도 적극재산 가액에서 소극재산 가액을 뺀 순재산 가액이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① 전북 익산시 W 대 146m²

② 전북 익산시 W에 있는 X호 건물(①, ②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③ 충남 서산시 Y 임야 2,361m²의 397/2,361 지분(2011. 3. 22. 당시 거래가액 34,104,000원)
- ④ 충남 서산시 Z 임야 1,303m²의 50/1,303 지분(2011. 3. 22. 당시 거래가액 4,263,000원)
- ⑤ 평택시 AA아파트, AB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0,000,000원

위와 같이 피고 A이 다액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산(158,868,240원) 중 74% (= 118,503,000원 (= 16,338,000원 + 102,165,000원) / 158,868,24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토지(16,338,000원)와 이 사건 건물(102,165,000원)의 소유권을 적극재산이 훨씬 많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의진

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별지